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상호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별지 서식 변경
(안 제1조, 제5조, 제8조, 안 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6호서식)
 - 현행 : 「지진재해대책법」 → 개정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 - 현행 : 「건설기술관리법」 → 개정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 - 현행 :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
→ 개정 :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
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 규정을 삭제
(안 제4조)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(안 제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- 본 『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고,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